# 재미대한태권도협회

정

관



# 재미대한태권도협회

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

2007 년 6월 25일 제정 2013년 6월 21일 개정 2017년 3월 16일 개정 2019년 6월 22일 개정

# 제1장 총 칙

- 제 1 조(근거) 본 정관은 재미대한체육회 정관 제 8 조(중앙경기단체) 및 제 71 조(규정 및 세칙)에 따라 체육회의 중앙경기단체인 재미대한태권도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- **제 2 조(명칭)** 재미대한태권도협회(이하 "본협회" 라 칭한다)는 영문명칭을 "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nited States of America" 라 칭하고 약칭으로는 KTA in USA 로 표기한다.
- 제 3 조(목적) 본협회는 미국 한인 태권도 경기종목을 대표하고 재미대한체육회 산하 지역체육회 가맹태권도경기단체를 규합하여 지휘·감독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 4 조(소재지)** 본협회의 사무소는 재미대한체육회 본부가 있는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협회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둘 수 있다.
- 제 5 조(법인등기) 본협회는 미합중국 연방법과 본부지 주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 제 2 장 사 업

제 6 조(사업) 본협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정통 태권도를 미국에 널리 보급하며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태권도인 및 그 단체를 통활 지도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며 태권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① 태권도 경기운영의 기본 방침 심의 · 결정
- ② 태권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
- ③ 태권도 경기대회의 개최 · 주관 및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 · 육성
- ④ 각 지회의 지도, 육성 및 감독
- ⑤ 각 지회의 대회 개최 및 주관의 승인 · 지원
- ⑥ 미주 한인체전과 한국 소년 · 전국체전 및 각종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· 지원
- ⑦ 태권도 세미나, 자격증 발급, 심사 교육을 통해 우수 지도자 양성
- ⑧ 미주 태권도 지도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 수립·시행
- ⑨ 주미대사배 및 주미 총영사배 태권도대회 주최·주관
- ⑩ 국기원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
- ① 대한민국태권도협회에서 위임받은 사업에 관항 사항
- ② 기타 본협회 발전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

# 제 3 장 구 성

제 7 조 (구성) 본협회는 본부와 지역태권도협회(이하 '지회'라 한다)를 구성하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 제 8 조 (재미대한태권도협회 본부)

- ① 미국에서 활동하는 태권도 한인 경기단체를 대표한다.
- ② 재미대한체육회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산하단체로서 지휘 감독을 받는다.
- ③ 재미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지역체육회에 가맹한 지역태권도협회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회로 둔다.
- ④ 본협회에서 인준한 지회(지역태권도협회)와 지회조직(Club)을 지휘, 감독한다.
- ⑤ 본협회는 인준된 지회 및 지회조직을 보호 육성 할 의무를 갖는다.
- ⑥ 본국에서 적용하는 대회규정 및 경기규칙에 준하여 규정을 제정 모든 대회 및 경기에 일관성 갖는다.
- ⑦ 본협회의 자격은 5개 이상 지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 9 조 (지역태권도협회)

- ① 지회는 본 정관 제 8 장(지회의 승인 및 회원)에 의거 승인, 인준된다.
- ② 본협회 규정에 의거 회원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한다.
- ③ 지회로 승인된 지회는 본협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
- ④ 지회의 대표자는 본협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- ⑤ 지회의 인준 및 탈퇴는 본협회 총회 의결로 확정된다.
- ⑥ 본협회는 본 정관 제 8 장에 준하여 지회 규정을 정한다.

## 제 10 조 (승인된 단체의 회장 인준)

- ① 각 지회는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 보고서를 본협회에 보고한다.
  - 1. 단체장 보고서
  - 2. 단체본부 임원보고서
  - 3.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
  - 4. 총회의 회의록
- ② 각 지회는 회장선출 년도에 개최되는 총회결과 내용을 30 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보고서를 본협회에 보고한다.
  - 1. 단체장 변동보고서
  - 2. 단체본부 임원보고서
  - 3. 회장선출 회의의 회의록 및 선거결과 보고서
  - 4. 회장선출 회의의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
- ③ 본협회의 승인된 지회가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하지 않았거나 총회보고를 아니할때는 본협회절차에 의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- ④ 본 규정의 적용은 이사회에서 확인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유효하다.

# 제 4 장 조 직

**제 11 조 (조직)** 본협회는 본부, 대의원, 이사로 조직한다.

제 12 조 (본부) 본협회의 본부는 임원, 감사, 분과위원회,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조직한다.

- ① 본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- 1. 회장 1 인
  - 2. 수석부회장 1인
  - 3. 상임부회장 약간명
  - 4. 부회장 약간명
  - 5. 전무이사 1 인
  - 6. 사무국장 1 인
  - 7. 사무차장 1 인
  - 8. 기획실장 1 인
  - 9. 재무 1 인

- 10. 이사 50 명이내
- 10. 감사 2 인
- ② 본협회는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회장이 상설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기획·조정분과위원회
  - 2. 경기 · 기술분과위원회
  - 3. 소청 · 상벌분과위원회
  - 4. 교육분과위원회
  - 5. 행사분과위원회
  - 6. 심판분과위원회
  - 7. 코치분과위원회
  - 8. 여성분과위원회
  - 9. 회원관리분과위원회
  - 10. 출판·홍보분과위원회
  - 11. 대외협력분과위원회
  - 12. 차세대분과위원회
  - 13. 장애인분과위원회
- ③ 본협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- 1. 명예회장 1인
  - 2. 고문 필요인
  - 3. 자문위원 약간인
- ④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 지회는 명단을 본협회에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하며, 본협회는 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본협회의 모든 임원과 위원 그리고 이사는 본협회양식의 신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3 조(대의원)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, 본부대의원, 위임대의원으로 구분한다.
  - ① 당연직 대의원
    - 1. 본협회의 승인된 지회는 각 1 인의 대의원을 본협회에 둔다.
    - 2. 지회의 현직 회장은 본협회의 당연직대의원이 자동으로 된다.
    - 3. 당연직대의원은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본부 대의원
    - 1. 본협회의 회장, 부회장과 전무이사는 본부대의원이며 그 자격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.
    - 2. 지회의 단체장이 본부대의원 직책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직대의원 자격만 주어진다.

- ③ 위임 대의원
  - 1. 당연직대의원의 권한을 본정관 13 조 1 항에 의거 위임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.
  - 2.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회의 전직회장, 현직부회장으로 한다.
  - 3. 위임대의원의 위임장은 총회개회 3 일전까지 본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4. 위임대의원의 자격은 소집된 당 총회에만 한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.
- **제 14 조 (이사)** 본협회는 당연직이사와 추대이사로 구분하여 이사를 두며 상임이사 제도를 상설·운영한다. 또한, 본협회 실정에 맞추어 이사회를 구성 할 수 있다.
  - ① 당연직 이사
    - 1. 본협회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본협회임원 모두는 당연직이사가 된다.
    - 2. 임명된 각 분과위원장 모두는 당연직이사가 된다.
  - ② 추대이사
    - 1. 회장이 당연직이사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.
    - 2. 추대이사는 임명된 당연직이사 수의 2분의 1이하로 한다.
  - ③ 본협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한다.
    - 1. 상임이사는 이사의 동의하에 회장이 5 인 이상으로 임명 구성한다.
    - 2. 긴급히 소집할 수 있는 이사 중에서 임명된다.

#### 제 15 조 (임기)

- ① 회장의 임기 및 연임
  - 1. 회장의 임기는 정기 2 년의 임기와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  - 2. 연임이 본 정관 1 회를 초과하여 2 차 연임부터는 회장선출 총회 21 일전 재미대한체육회에 총회감독관 참관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3. 회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후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하되 회장선출일을 기준으로 한다. 또한,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시작과 종료 시기를 달리하였을 때에는 재미대한체육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4. 회장의 연대는 반드시 매 2 년(홀수년도)마다 연속해서 가산된다.
  - 5. 회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한다.
  - 6. 회장은 본협회 및 산하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이든 겸임할 수 없다.
-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.
- ③ 모든 임원, 분과위원장, 위촉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고, 회장을 제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 할 수 있다.
- ④ 대의원 및 이사
  - 1. 당연직대의원의 임기는 소속단체 대표자 자격이 유효할 때까지이다.
  - 2. 본부대의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으며 본부조직 직책을 유지할 때까지이다.

- 3. 이사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으며 당연직이사는 직책을 유지할 때까지이다.
- ⑤ 임원은 정관에 명시한 임기가 만료되었을지라도 차기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#### 제 16 조 (본부임원의 선임)

- ① 임원, 감사 및 분과위원장
  - 1. 회장 1명, 감사 2명은 미주체전 기간중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  - 2. 부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  - 3. 기타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② 위촉위원
  - 1. 명예회장은 회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. 단, 해당 중앙경기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상임고문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.
  - 2. 고문은 본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임고문이 된다.
  - 3. 자문위원은 본협회의 취지를 동조하며 본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, 회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명단을 재미대한체육회에 14 일 이내에 보고한다.

## 제 17 조 (임원의 피임자격)

- ① 미국에서 최근 만 3 년(1,095 일) 이상 거주한 한인이어야 한다.
- ② 한국 및 미합중국 또는 단체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본협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. 또한, 본협회 그어떠한 임원에 선출, 임명될 수 없다.
  - 1. 어느단체에서라도 징계를 집행 중 또는 완료 6 개월 전인 자
  - 2. 범법 행위로 인하여 \$5,000.00 이상의 금고형과 6 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체육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에서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- 3. 반국가적 단체에 관련하고 있는 자
  - 4.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동포사회에 지탄을 받은 자로 본협회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는자
  - 5. 역대 체육단체 회장선거시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회장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선거 관계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
  - 6. 본협회 정관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
  - ③ 회장 피임자격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.
    - 1. 본협회의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 2년(1회) 이상을 완수한 자
    - 2. 덕망이 있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
  - ④ 상기에 명시한 날짜는 입후보등록 또는 임명일을 기준으로 한다.

#### 제 18 조 (보선 및 직무대행)

- ① 보선 당선자와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연임제한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- 1.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선출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남았을 때에는 30 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보궐선거는 본협회 선거세칙에 의하여 실시된다.
  - 2.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선출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 없이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한다.
  - 3. 본항 제 2 호를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총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투표하여 최고득표자가 회장직무대행을 한다.
  - 4. 회장직무 대행이 없을 때에는 본 정관 37 조(총회특례)를 시행하며 총회결정에 따른다.
  - 5. 회장당선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선거운영 세칙을 따른다.
  - 6. 불분명할 때에는 보선 및 직무대행을 결정하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.

#### ② 감사

- 1. 감사 중에서 1 명이 현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 방법을 결정하여 추가로 1 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2. 감사 2 명 모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30 일 이내로 2 명 감사에 대한 보궐 선출을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3. 본항의 제 2 호의 감사보궐 선출은 서면결의 총회로 할 수 있다.
- ③ 추대이사의 충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.
- ④ 임명직 임원
  - 1. 부회장을 충원할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  - 2. 회장이 임명한 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충원은 회장 직권으로 한다.
-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.
- ⑥ 본 조항(보선 및 직무대행)이 불분명할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.

#### 제 19 조 (직책별 의무 및 권한)

- ① 회원 및 임원, 이사 그리고 위원은 본협회의 정관 및 본협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, 이행 할의무를 가진다.
- ② 본협회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각종 회의의 질문에 응답하고 진술 할 수 있다.
- ③ 회장
  - 1. 재 미국 태권도협회를 대표한다.
  - 2. 본협회의 행정과 회계를 책임진다.
  - 3. 각종 회의소집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
  - 4.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최종확인 공포한다.
  - 5.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작성한다.

- 6. 재정, 업무 및 사업실적을 총회 때 보고한다.
- 7. 회장은 본협회에서 그 어느 직책도 겸임할 수 없다.
- ④ 수석부회장, 상임부회장, 부회장
  - 1. 회장을 보좌한다.
  - 2.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3. 본협회의 행정업무상 특성에 대해 그 직무를 나누어 수행할 수 있다.
- ⑤ 전무이사
  - 1.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.
  - 2. 본협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.
  - 3. 본협회 임원의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.
  - 4. 본협회와 지회의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.
  - 5. 회장 및 감사가 업무 보고서를 요구시 즉시 보고한다.
- ⑥ 사무국장
  - 1. 전무이사를 보좌한다.
  - 2. 전무이사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  - 3. 재무 유고시 재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  - 4.각종 회의에 참석 회의록을 기록 및 관리보관 한다.
- ⑦ 재무
  - 1. 본협회의 회계를 정리기록 관리한다.
  - 2. 회장 및 감사가 회계보고서를 요구할 때 그 즉시 보고한다.
- ⑧ 기획, 조정분과위원회
  - 1. 본협회가 추진하는 연중 사업을 기획한다.
  - 2. 본협회의 연중 업무를 기획한다.
  - 3. 본협회의 업무를 사무처와 사전 조정한다.
- ⑨ 경기, 기술 분과위원장
  - 1. 본협회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에서 경기 및 기술운영을 관장한다.
  - 2. 각종 대회결과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.
- ⑩ 소청, 상벌분과위원회
  - 1. 본협회 소청, 상벌분과위원회의에 의장이 된다.
  - 2. 본협회 정관 제 12 장(포상규정), 제 13 장(징계규정)에 의해 포상 및 징계대상자를 선별·심의한다.
  - 3. 본협회의 상벌세칙에 따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.
- ⑪ 교육분과위원회
  - 1. 도장 운영, 지도자 교육 세미나등을 통해 우수 지도자를 양성한다.
  - 2. 본협회 총회를 통해 결정 된 각종 교육 세미나를 통해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다.

- ① 행사분과위원회
  - 1. 본협회의 수익 사업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기획 관장한다.
  - 2. 각종 대회 및 행사 결과를 사무처에 서면 보고한다.
- ③ 심판분과위원회
  - 1. 본협회가 주최,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심판운영을 관장한다.
  - 2. 심판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부 할 수 있다.
- ④ 코치분과위원회
  - 1. 코치 세미나를 통해 우수한 코치, 감독을 양성한다.
  - 2. 본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 본협회 대표 감독, 코치를 임명한다.
- ⑤ 여성분과위원회
  - 1.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.
  - 2. 여성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한다.
- ⑩. 회원관리분과위원회
  - 1. 각 지역의 도장을 관리 한다.
  - 2. 태권도인들의 신속한 경조사 참여를 더욱 공고히 하여 결속을 강화한다.
- ①. 출판, 홍보분과위원회
  - 1. 본협회의 역사편찬 및 각 행사 자료를 출판, 홍보한다.
  - 2. 본협회의 각종 대회 홍보물을 제작, 홍보한다.
- ⑫. 대외협력분과위원회
  - 1. 본협회의 대외적인 교류를 위해 기획하며 섭외한다.
  - 2. 재 해외동포 태권도협회와 업무관계를 공조한다.
- ⑩. 차세대분과위원회
  - 1. 한인 청소년들에게 각종 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의식을 함양 시킨다.
  - 2. 태권도를 통해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 시킨다.
- ②. 장애인분과위원회
  - 1. 장애인 태권도를 통해 믿음과 희망과 꿈을 고취 시킨다.
  - 2. 장애인 태권도를 통해 한인 동포 사회의 봉사 참여 의식을 고취 시킨다.
- ②. 감사
  - 1. 감사는 본협회의 재정회계를 감사한다.
  - 2.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.
  - 3. 감사는 필요시 본협회의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.
  - 4. 감사는 감사 중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.
  - 5.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 때에 보고한다.
- ②. 명예회장
  - 1. 회장을 자문한다.
  - 2. 본협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한다.

- ②. 고문
  - 1. 본협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.
  - 2. 본협회의 사업 및 취지를 숙지하여 대외적으로 계몽한다.
- ❷. 자문위원
  - 1. 본협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.
  - 2. 본협회의 목적 및 취지를 홍보한다.

#### 제 20 조 (임원의 사임)

-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즉시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.
  - 1. 당연직 이사는 그 해당직위를 상실한 경우
  - 2.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 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였을 경우
- ③ 기타 총회의 의결로 특별히 정할 수 있다.

#### 제 21 조 (지역태권도협회 가맹승인 요건)

- ① 지역체육회 산하 조직체를 갖춘 한인 태권도 단체이어야 된다.
- ② 지역체육회 한인 태권도 단체를 통합 지휘·감독하는 단체이어야 한다.
- ③ 본협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제반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제 22 조 (가맹의 구분) 본협회 정관을 충족하고 본협회에서 가맹승인 받은 단체를 지회로 한다. 또한, 본협회는 태권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준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서 결정하며 권리사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
#### 제 23 조 (가맹절차 및 승인)

- ① 본협회에 지회로 가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1. 구비서류

가. 가맹원서	1 부
나. 집행부(임원) 명단	1부
다. 단체장 이력서	1 부
라. 지회 명부와 지회장 명단	1 부
마. 사무실 약도	1 부
바. 단체결성 총회 회의록	1부

- 2. 본 정관 제 21 조(가맹승인 요건)를 이행하고 본협회의 승인 후 지회가 된다.
- 3. 본협회는 승인된 지회에 "인준증"을 발급한다.
- ② 가맹 승인은 본협회 이사회가 심의하며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.

#### 제 24 조 (권리 및 의무)

- ① 지회는 본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.
  - 1. 공인된 단체 명칭의 고유 권한을 갖는다.
  - 2. 지역에 있는 태권도 한인 경기단체를 대표하는 권리가 주어진다.
  - 3. 본협회에 건의와 소청 권리를 갖는다.
  - 4. 본협회가 위임 또는 승인하는 사업 및 대회에 주최, 주관, 후원할 수 있는 권리 갖는다.
  - 5. 본협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갖는다.
  - 6. 본협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그 권한을 갖는다.
- ② 지회는 본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.
  - 1. 정관 및 본협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, 이행 할 의무를 진다.
  - 2.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3. 자체 상벌관계를 보고하여 업무공조를 한다.
  - 4. 본협회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나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한다.
  - 5.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주최, 주관 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동시에 본협회에 보고한다.
  - 6. 대회참가 및 외부단체 초청 관계를 본협회와 사전 합의한다.
  - 7. 본협회가 규정한 보고서를 제출한다.
  - 8.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주최, 주관하였을 때에는 행사 종료 후 사업결과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30 일 이내로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9. 본협회에서 규정한 년지회비 \$200 불을 매년 1월 3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지회는 의결권, 선거권 및 발언권이 없다.

## 제 25 조 (회기)

- ① 본협회의 회기를 만 1 년으로 한다.
- ② 본협회의 회기는 미주체전이 개최되는 6월 마지막 주말을 기준으로 매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한다.
- ③ 본협회 실정에 맞추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그 사유서를 재미대한체육회에 제출한다.

#### 제 26 조 (총회시기)

- ① 본협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규정된 회기종료 30 일전 이내에서 개최한다.
- ② 본협회는 총회계획을 총회 개최일 21 일 전까지 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.
- ③ 본협회는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총회보고서를 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. 또한, 회장선출이 있는 총회보고서는 별도로 규정한다.
  - 1. 단체장 보고서
  - 2. 단체본부 임원보고서
  - 3.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
  - 4.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
  - 5. 당 총회의 회의록

- ④ 본협회는 정관 제 13 조(대의원)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본협회는 총회감독관을 재미대한체육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#### 제 27 조 (회장 인준)

- ① 본협회의 승인된 지회에서 새롭게 선출 확정된 단체회장은 다음과 같이 본협회에서 확인되며 그 자격이 주어진다.
  - 1. 회장확정 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보고서를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해당단체의 회장인준을 받는다.
    - 가. 단체장 변동보고서
    - 나. 단체본부 임원보고서
    - 다. 회장선출 회의의 회의록 및 선거결과 보고서
    - 라. 회장선출 회의에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
    - 마.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
    - 2. 상기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본협회 선거참관인 보고서(선거를 참관하였을 시)에 의하여 본협회에서 인준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② 본 정관에 의거 인준된 단체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규정된 임기기간 동안 본협회의 대의원자격이 주어지나 본 정관 제 14 조 제 4 항을 준수하여야한다.
- ③ 본협회에 보고된 모든 보고서는 본협회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.

# 제 5 장 대의원총회

제 28 조 (구성) 대의원 총회(이하 '총회'라 한다)는 본 정관 제 13 조에 의하여 구성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- 제 29 조 (대의원 구성방법) 대의원 총회(정기 및 임시총회 포함) 개최시마다 구성하며, 그 임기는 다음총회 개최 전일까지 한다.
- 제 30 조 (기능) 대의원 총회는 본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
  - 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- 3. 사업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- 4. 선거관리 위원장 인준 동의에 관한 사항
  - 5. 지회 승인 및 퇴출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
  - 6. 본협회의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
  - 7. 기타 중요 사항

제 31 조 (소집) 본협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또는 서면결의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① 정기 대의원총회
  - 1. 본협회는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개회식을 기준으로 만 1 년 주기로 한다.
  - 2. 매년 규정된 회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0 일전 이내에 개최 한다.
  - 3. 장소는 다음과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- 가. 회장선거가 있는 년도에는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개회식 전후로 한다.
    - 나. 미주체전이 없는 년도에는 본부지에서 총회를 개최한다.
- ② 임시 대의원총회
  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- 2. 재적대의원 2 분의 1 (과반수) 이상의 동의 하에 서면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, 소집권자는 접수날로 부터 30 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  - 3. 재적이사 2 분의 1 (과반수)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, 소집권자는 접수 날로부터 30 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.
  - 4. 본 정관에 의거 감사가 소집요구를 하였을 때
  - 5. 장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 전국을 순회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③ 서면결의대의원총회는 본협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.
  - 1. 본협회 규정에 출석대의원 3 분의 2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 의결규정 또는 정관과 상반되는 의제는 서면결의대의원총회소집으로 할 수 없다.
  - 2. 서면결의대의원총회 의제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.
  - 3. 의제에 대한 결의는 재적대의원 2 분의 1(과반수)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  - 4. 서면결의 대의원총회 소집에는 다음사항을 명시 하여야한다.
    - 가. 긴급을 요하는 사유
    - 나. 의제 및 의제에 관한 설명
    - 다.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  - 라. 서면결의대의원총회의 결과를 모든 대의원과 이사에게 서면(이메일을 포함한다)으로 통지해야 한다.
- ④ 총회 소집은 늦어도 개최 7 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(이메일을 포함한다)을 대의원에게 통지한다.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7 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총회는 제④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다만,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- 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어야 한다.
  -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.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

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⑦ 총회개최 일시는 본협회 규정에 명시한 시일 이내에서 회장이 결정한다.

#### 제 32 조 (안건)

- ① 회장은 총회의 의제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의제가 된다.
  - 1. 대의원 3 인 이상 동의를 얻어 문서로 본협회에 건의된 안건
  - 2. 이사회에서 의결 된 총회상정 안건
  - 3. 총회 도중에 긴급 안건을 부의 할 수 있다. 단, 긴급 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의제가 된다.
- ② 개인 또는 1 개 단체가 안건 건의를 서면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의 되어야 총회의제가 될수 있다.

#### 제 33 조 (대의원총회의 성원과 의결)

-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2분의 1 (과반수)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제확정은 다음과 같이한다.
  - 1.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의결 찬성 수는 변경할 수 없다.
  - 2. 정관규정과 상반되는 의제를 의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상반되게 의결하여야 할때에는 재적대의원의 3 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 확정된다.
  - 3. 본 항 제 1 호 및 제 2 호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2 분의 1 (과반수) 이상 찬성으로 의결확정된다.
- ② 의결방법은 의제별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당 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총회에서 결정할 때는 그 시행 마감일이 함께 결의되어야 하는 것원칙으로 한다.
- 제 34 조 (총회 의결 제한)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.
  - ① 본협회 회장은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당 총회 의장이 될 수 없다.
  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과 대의원은 그 의제에 결정권 및 의결권이 없다.
    - 1.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단체 및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징계사항
    - 2. 금전의 수불과 재산의 거래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
  - ③ 상기 제②항 제가호 및 제나호에 관련자는 표결 시 대의원 재적수에서 제외된다.
  - ④ 심의과정이 없었던 징계결정은 최고 정지(자격정지, 직무정지)까지 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이사회 또는 상벌위원회로 회부(하달)하여야 한다.

## 제 35 조 (총회운영규정 및 보고)

① 총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방법은 당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총회계획 및 결과를 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.

#### 제 36 조 (총회소집통보 및 공고)

- ① 소집을 요하는 통보에는 회의의 종류, 토의의제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고. 본협회 명으로 한다.
- ② 선거가 있는 년도의 총회소집 공고 및 통보는 상기 내용과 선거내용 및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을 명시하여 통보한다.
- ③ 소집을 요하는 총회공고는 본협회 실정에 맞추어 규정하며 시기는 다음과 같다
  - 1. 총회개최 30 일 이잔까지 공고한다.
  - 2.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시 개회 1 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본협회는 지회와 이사에게 FAX, E-Mail, 우편 등을 이용하여 총회개최 21 일전까지 통보한다.

#### 제 37 조 (총회 특례)

-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권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15 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.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  - 2.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해당 대의원 추천단체(소속)의 장 3분의 1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해당 대의원 추천단체(소속)의 장 3 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재미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는 참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이장을 선출한다.

# 제 7 장 이사회

제 38 조 (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, 이사로 구성하며 본협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제 39 조 (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.

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결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제 규정의 개정 사항
- 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6.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· 상정
- 7.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괄
- 8. 제반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심의

9. 기타 중요한 사항

## 제 40 조 (이사회 소집)

-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· 부회장 ·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3 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.

## 제 41 조 (이사회의 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회 소집권자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, 일시, 장소를 명기하여 재미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있다.
- ②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#### 제 42 조 (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.
-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청으로 의결한다.
-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- ④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

#### [해결] 과반수 출석의 정의

과반수 출석이라 함은 재적 이사 저원이 12 명이라고 한다면 6 명이상의 아닌 7 명 이상이 참석해만 회의가 성립됨을 말한다.

- 제 43 조 (상임이사회의 설치운영) 본협회는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상설 운영할 수 있다.
  - ① 상임이사 구성은 본 정관 제 4 장(조직) 제 14 조(이사) 3 항과 같다.
  - ②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  - ③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또한,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한다.
  - ④ 회장은 상임이사 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7일 이내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.
  - ⑤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의 효력은 이사회와 같고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이사회에서 미리 정할 수 있다.
  - ⑥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이사가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한다.
- 제 44 조 (서면결의) 본협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

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.

- 1. 의제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- 2. 서면결의 이사회의 소집에는 다음사항을 명시 하여야한다.
  - 가. 긴급을 요하는 사유
  - 나. 의제 및 의제에 관한 설명
  - 다.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- 라. 서면결의 이사회의 결과를 모든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
## 제 45 조 (긴급처리)

-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소집 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이사회 소집결의로 할 수 있으나,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이 이를 회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# 제 8 장 지회승인 및 회원

- 제 46 조 (지역태권도협회 설치) 본협회의 사업목적 및 수행을 위하여 미국 각 주 또는 주요 도시에 지역태권도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① 본협회의 인준된 지회("주" 또는 "카운티")는 가맹된 지역태권도단체를 회원으로 둔다.
  - ② 인준된 지회는 본협회 대하여는 지회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, 각 "주", 또는 "카운티"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한다.
    - 1. 명칭은 재미대한태권도 협회 OOOO 지부로 칭한다. 영문으로는 Korea Taetaekwondo Association of OOOO 으로 표시한다.
  - ③ 지회는 소관지역 내에서 구역별로 산하단체로 각 "카운티" 또는 "시"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.
  - ④ 지회는 그 사무소를 지역체육회 소재지에 둔다. 다만,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⑤ 지회 규약은 본협회 정관을 준수하여 제정하되 지역체육회를 경유하여 본협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 또한, 대회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협회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  - ⑥ 본협회의 임원이 본협회 또는 지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,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협회 상벌규정 및 지회의 상벌규정에 따른다.
  - ⑦ 본 조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협회 정관 및 재미대한체육회 정관등을 준용한다.

#### 제 47 조 (지역태권도협회 구성 및 총회)

① 본협회가 승인한 지회에 가맹한 "지역태권도협회"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1. 본협회가 지역체육회에서 가맹 승인한 지역태권도협회를 지회로 가입승인 하였을 때본협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2. 본협회에서 지회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지역태권도협회를 지회로 둘 수 있다. 단, 본협회 정관에 의하여 "준 지회"로 되며 권리사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- 3. 각 지회는 집행부와 클럽(CLUB)이 3 개 이상 소속으로 있어야 한다.
- ② 지회 총회의 구성은 본협회 정관을 준용하여 한다.
- ③ 지회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구성없이 이사회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. 단, 본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**제 48 조 (지역태권도협회 승인 및 회장인준)** 본협회의 지역적인을 특성을 고려하여 지회의 단체승인과 선임임원은 관할 지회의 소관이며 다음과 같이한다.
  - ① 본협회가 태권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회 설치요청이 있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역체육회는 거부할 수 없다.
  - ② 본협회는 지역체육회가 없는 지역에 지회를 임의적으로 설치 · 승인할 수 있다.
  - ③ 본협회는 지역체육회에 승인 인준된 지역태권도협회가 있을 시 임의로 여타단체를 지회 승인을 할 수 없다.
  - ④ 지역태권도협회 선임임원은 관할 지역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- ⑤ 지역체육회는 지역태권도협회 선임임원 인준 시 본협회에 사전 조회를 할 수 있다.
  - ⑥ 본협회는 의견을 조회하여 지역체육회에 확인 통보한다.
  - ⑦ 지회의 인준을 받은 지역태권도 단체장은 해당 지역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인준사항을 즉시보고하여야 하여 지회장 인준을 받는다.
  - ⑧ 본협회는 지역체육회에서 인준한 선임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회장으로 인준하여야 한다.
  - ⑨ 지회는 지역태권도 단체장 인준신청에 시정사항이 있으면 2 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본협회를 경유하여 해당 지역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⑩ 지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협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- 제 49 조 (회원) 회원의 모든 소관을 지역태권도협회이며 본 정관을 준용한다.
  - ① 회원자격
    - 1. 재미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한다.
    - 2. 부모 중 1 명(1/4) 이상이 한인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- 3. 체육회의 취지를 찬동하며 모든 모임에 적극 참석할 수 있는 자 이어야 된다.
    - 4. 소속 단체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  - ② 회원의 구분을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- 1. 회원은 제 1 항의 자격을 갖춘 각 지역경기단체에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회원
- 2. 명예회원은 본협회를 비롯하여 체육계발전에 공헌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, 지회에서 그 자격이 부여된다.
- ③ 회원의 소속 및 지역
  - 1. 모든 회원은 각 소속단체의 소정의 서류에 의하여 등록접수 한 단체에 소속된다.
  - 2. 등록된 회원이 만 2 년 이상 소속단체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  - 3. 회원의 거주지가 소속 관할지역 본부보다 등록하고자하는 본부가 멀었을 경우 (25 마일이내는 제외) 관할 지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.
  - 4. 회원은 1 개 단체에 소속되며 이중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.
  - 5. 소속단체에서 타 단체로 이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    - 가. 전 소속 단체에서 이적동의서에 의하여 이적할 수 있다.
    - 나. 거주지 이사로 의한 이적은 이사 거리가 50 마일 이내 일 때에는 전 소속단체의 이적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.
    - 다. 소속단체에서 만 2 년 이상 단체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. 단, 전 소속에서 활동기간 동안의 의무를 완료하였어야 된다.
  - ④ 회원의 의무 및 권한
    - 1. 본협회와 각 소속단체에서 주최,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출전할 수 있으며, 대표 팀 선발 대상이 된다.
    - 2. 본협회와 각 소속단체의 규정 및 의결한 제반사항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.
    - 3. 본협회 또는 소속단체의 의무금을 납부 할 의무를 진다.

#### 제 50 조 (지회가입승인서류)

- ① 구비서류
  - 1. 지역체육회 가입승인 1부
  - 2. 지회장 이력서 1 부
  - 3. 집행부(임원) 명단 1 부
  - 4. 단체결성 총회 회의록 및 참석인원 명부 1 부
  - 5. 회의사진
- ② 본협회는 승인된 지역태권도협회에 승인증을 발급한다.

# 제 9 장 사 무 국

제 51 조 (사무국) ① 본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사무국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 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협회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#### 제 52 조 (사무국 구비서류) ① 본협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· 관리한다.

- 1. 정관
- 2. 임원 및 고문, 자문위원, 이사 명부
- 3. 지회 및 지회장 명부(연락망)
- 4. 재정 출납장부
- 5. 은행구좌 및 은행 출납 장부
- 6. 자재 목록
- 7. 각종 회의록
- 8. 사업실적 기록부
- 9. 기타 공문서 발송 기록 및 접수 기록
- 10. 지회의 정관
- ② 모든 서류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, 서류를 열람 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.

# 제 53 조 (자체 총회에 대한 보고서) 회장은 해당 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매년정기총회 때에 제출 보고한다.

- 1. 회계 보고서(수입 및 지출결산서)
- 2. 자재 보유 현황보고서
- 3. 사업 실적 및 성과보고서
- 4. 지회 및 단체장 변동사항 보고서
- 5. 임원 변동 사항 보고서

# 제 10 장 자산 및 회계

#### 제 54 조 (자산) ① 본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.

- 1. 본협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
- 2.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
- 3. 회비
- 4. 공공단체의 보조금
- 5. 기부금 및 찬조금
- 6. 사업 수입금
- 7. 기타 수익금

#### 제 55 조 (자산의 관리)

- ① 본협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자산으로 한다.
  - 1. 기금
  - 2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자산에 편입되는 자산
- ② 본협회의 자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자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.
- ③ 본협회의 기본자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- 1.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
  - 2. 재산상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.
  - 3. 차입금도 해당 년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다.
- **제 56 조 (사업계획 및 승인)** 본협회의 연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 57 조 (수입)

- ① 모든 수입금은 본협회 자산으로 한다.
- ② 모든 수입금은 "재미대한태권도협회" 명의로 징수 및 모금되어야 한다.
- ③ 본협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.
  - 1. 임원회비
  - 2. 지회비 및 가입비
  - 3. 지역체육회 년 회비 및 가입비
  - 4. 이사회비
  - 5. 본협회 개최 및 주최, 주관하는 대회, 행사참가비
  - 6. 벌과금
  - 7. 찬조금 및 기부금
  - 8. 본협회 사업수입금
  - 9. 재미대한체육회 보조금
  - 10. 기타 수입금
- ④ 본협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그 누구도 본협회 명의를 도용하여 모금할 수 없다.

#### 제 58 조 (년회비) 각 항의 회비는 년 회비로 한다.

- ① 임원 및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지회비와 가맹비 및 지역체육회 회비와 가입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1. 각지회의 년회비는 \$200 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1 월 30 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- 2. 가입비(가맹)는 \$200 이며 년회비를 가산한다.
- ③ 매년 정기총회까지는 차기회기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.
- ④ 지회비 미납협회는 본협회 의결권, 선거권 및 발언권이 없다.
- ⑤ 지회비 및 가입비(가맹)는 총회에서 결정, 재조정 할 수 있다.

#### 제 59 조 (대회비 관리)

- ① 본협회 개최 및 주최, 주관하는 대회, 행사 참가비
  - 1. 본협회가 주관, 개최하는 대회 및 행사에 단체 또는 개인이 내는 참가비이다.
  - 2.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, 30 일 이내로 결산 후 본협회 자산으로 귀속된다.
  - 3. 정기총회에서 행사(대회) 결과 및 결산내역을 행사별로 별도 보고한다.
  - 4. 미주체전의 경우 90 일 이내로 결산 후 이익금은 미주체전 법에 명시된 계산법에 따라 재미대한테육회 자산으로 귀속한다.

#### ② 벌과금

- 1. 모든 징계에는 벌과금 책정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본협회의 징계 확정에 의한 벌금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.
- 3. 징수된 벌과금은 본협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.
- 4. 징계기간이 해제되었어도 벌과금은 완납하여야 징계가 종료된다.
- ③ 찬조금 및 기부금
  - 1. 모든 기부금은 그 기부자의 명시의사 목적에 사용하고 잔여금은 본협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.
  - 2. 찬조금은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결산 후 본협회 자산으로 귀속한다.
- ④ 본협회 사업수입금
  - 1. 본협회는 제 3 조(목적)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6 조(사업)의하여 수익사업을 한다.
  - 2. 사업별로 30 일 이내로 결산 후 본협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.
  - 3. 정기총회에서 사업의 결과 및 결산을 사업별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모든 자산관리는 비영리단체 운영원칙에 준하여야 한다.
- ⑥ 본협회에서 책정된 개인회비는 중복하여 산출하지 않으며, 만약 중복될 경우 높은 회비만 책정된다.
- ⑦ 모든 회계관리는 회계담당자(재무)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한다.
- ⑧ 회계담당자(재무)는 수입명세서를 기록 보관한다.

#### 제 60 조 (예산집행) 본협회의 예산집행은 본협회 이사회에서 심의 · 의결하여 집행한다.

- ① 모든 지출은 "재미대한태권도협회" 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지출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긴급을 요할시 회장 직권으로 \$500 이내로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. 단, 7 일 이내에 모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, 이사회에서 그 사용 내역을 문서로 밝혀야 한다.

- ④ 재 미국대한태권도협회 은행구좌에는 2 인 이상 서명으로 해야하지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1 명으로 가능하다.
- ⑤ 모든 지출은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수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회계담당자(재무) 다음과 같은 지출사항을 기록 · 보관한다.
  - 1. 수입 및 지출명세서
  - 2. 지출의 근원기록 (지출 승인서)
  - 3. 지출 근거(영수증과 수표사본)
  - 4. 은행 수표 출납서(Bank Statement)

# 제 11 장 회기 및 감사

## 제 61 조 (회기)

- ① 본협회의 회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후년 6월 30일로 하되 정기대의원 총회부 정기대의원 총회 전날까지로 한다. 회장은 해당 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 때에 제출 보고한다.
- ② 본협회의 회기결산보고는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에 한다.

## 제 62 조 (감사) 본협회의 재정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감사로 구분한다

- ① 정기감사
  - 1. 본협회 감사는 회기감사를 실시한다.
  - 2.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받는다.
- ② 특별감사
  - 1. 회장은 분야별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실시할 수 있다.
  - 2. 감사가 회계업무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실시할 수 있다.
  - 3. 본협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실시한다.
  - 4. 본협회가 주최 주관한 행사 및 대회에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감사를 요구할 때부분 감사를 실시한다.
- ③ 감사는 감사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본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.
- ④ 감사는 감사에 불응할 때나 감사 중 혹은 감사 후 결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회 소집 또는 총회소집을 요구할 의무를 갖는다.

## 제 12 장 포상규정

- 제 63 조 (포상대상) 본협회의 포상규정은 본협회와 태권도 발전 등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때 포상함을 그목적으로 하며 상벌세칙을 두어 시행한다
  - ① 본협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태권도인 및 단체
  - ② 본협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 외부인사 및 단체
  - ③ 기타 태권도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로자
  - ④ 총회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.

## 제 64 조 (포상구분)

- ① 대내포상(공로)
  - 1. 본협회와 지회 그리고 회원에 준하여 포상한다.
  - 2. 회장 직권으로 체육인, 본협회와 지회에 포상할 수 있다.
  - 3. 포상의 표기는 공로패 및 공로상장으로 하며 회장명의로 한다.
- ② 대외포상(감사)
  - 1. 본협회의 외부 인사에 준하여 포상한다.
  - 2. 회장은 본협회 태권도 사업에 협조한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한다.
  - 3. 포상의 표기는 감사패 및 감사장으로 한다.

#### 제 65 조 (포상 추천과 심사 및 결정)

- ① 포상 추천은 대의원 및 이사의 추천으로 한다.
- ② 포상 심사는 본협회 상벌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- ③ 모든 포상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본협회 회장명의로 수여한다.
- ④ 회장 직권으로 수여할 수 있으며, 이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 제 13 장 징계규정

- **제 66 조 (징계의 구분)** 본협회의 질서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규정에 의하여 상벌세칙을 두어 시행한다.
  - ① 본협회는 징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  - 1. 퇴출
    - 2. 직위 해제
    - 3. 직무 정지
    - 4. 출전 정지
    - 5. 벌금

- 6. 봉사
- 7. 집행유예
- 8. 경고
- ② 기타 징계 구분은 본협회 소청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③ 각 지회(단체)의 납입금 미납자(단체)는 본협회 의결권, 선거권 및 발언권이 없다.

## 제 67 조 (징계대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(개인)는 징계대상이 된다.

- 1. 본협회의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- 2. 본협회를 명예훼손 하였을 때
- 3. 본협회에서 그 어떠한 직책이든 본연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

## 제 68 조 (징계건의)

- ① 본협회 이사와 대의원 중에서 3 인 이상의 동의하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② 대회 및 행사를 주최한 단체와 지회 보고서에 의하여 건의할 수 있다.
- ③ 모든 징계 건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총회에서 부의 상정할 수 있다.

#### 제 69 조 (직위해제, 해임, 직무정지 및 자격정지)

- ① 선출임원(회장, 감사)의 직위해제(해임) 안은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의 동의로 제의되고, 재적 대의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이를 결정한다.
- ② 회장이 매년 3월까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되지 않았을 때에는 4월 1일부터 회장은 자동으로 직무정지 된다. 또한, 직무대행권자가 4월 10일 전까지 정기총회 소집을 공지하지 않을 때에도 직무정지가 된다.
- ③ 본협회의 지회는 의무 납부금 미납시 완납할 때까지 그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미납금 완납과 동시에 그 자격이 회복된다.

#### 제 70 조 (퇴출) 본협회의 승인된 단체(개인)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퇴출 대상이 된다.

- 1. 본협회 정관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
- 2. 승인된 단체(개인)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협회의 지휘·감독을 거부할 때
- 3. 본협회에서 승인된 단체(개인)가 내부분쟁으로 파행이 지속되어 건전한 체육풍토를 저해하고 본협회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초래하였을 때.
- 4. 본협회의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 등 의무를 불이행하고 파행이 지속되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단체는 퇴출 대상이 된다.
- 5. 총회의 의결로 퇴출 대상이 된다.

#### 제 71 조 (단체 대표자(회장) 인준 취소)

① 단체 내에서 정당한 규정에 의거 회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단체장 인준이 취소된다.

- ② 다음 경우에 본협회의 서면결의 대의원총회를 거쳐 회장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단체장 선출과정이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
  - 2. 단체장 인준신청 내용에 사후 하자가 있을 때
  - 3. 본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되었을 때
  - 4. 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때

#### 제 72 조 (징계 심의 및 의결)

- ① 징계심의는 본협회 소청 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한다.
- ② 징계확정은 본협회 총회에서 의결한다
- ③ 회장, 감사, 명예회장, 상임고문의 징계는 소집된 총회에서만 의결 확정되며 기타 징계는 서면결의총회로 할 수 있다.

## 제 73 조 (재심 및 사면, 복권)

- ① 징계를 받은 자는 본협회 소청 상벌위원회에 1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재심, 사면 및 복권은 소청 상벌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결정으로 확정한다.
  - 1. 사면 복권은 본협회 대의원 중 출석 대의원의 2분의 1 (과반수) 이상 동의하였을 때
  - 2. 회장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.
  - 3. 총회에서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면 및 복권이 된다.
- ③ 모든 신청은 서면으로만 인정되며 시행된다.

# 제 14 장 선거운영

제 74 조 (선거운영) 선거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집행·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
- ① 회장은 선거일 45 일 이전에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.
- ② 선거관리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서 추천을 통해 임명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인, 부위원장 1, 총무 1 인을 포함하여 5 인 이내로 한다.

#### 제 75 (회장의 업무개시)

- ① 회장의 업무개시는 당선확정일 다음날로부터 한다.
- ② 신임 회장은 빠른 시일내애 임원을 임명하여 본협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.

#### 제 76 조 (업무 인계 및 인수)

- ①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를 차기 년도 집행부에게 사실대로 인계하여야 한다.
- ②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회장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그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.

- ③ 구 집행부 보직담당자는 새 집행부 보직담당자가 임명될 때까지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되며 새 보직담당자 임명 즉시 모든 실무에 관한 업무를 인계 하여야 한다.
- **제 77 조 (규정)** 선거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본협회 정관 및 재미대한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선거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한다.

# 제 15 장 정관 개정과 통합 및 해산

#### 제 78 조 (정관개정 및 수정)

- ① 정관 개정 및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을 심의한다.
- ② 정관의 개정 및 수정안은 소집된 총회에만 상정되며, 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- ③ 현직 임원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 당시의 정관규정을 따른다.
- ④ 개정된 정관은 재미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 79 조 (통합 및 해산) ① 본협회는 각 호의 다음 사유로 통합 및 해산한다.

- 1. 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이 통합 또는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
- 2. 재미대한체육회의 중앙경기단체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산된다.
- ② 해산하였을 당시에 잔여 자산은 본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.

# 제 16 장 부 칙

#### 제 80 조 (중재 및 조정)

- ① 본협회는 대의원, 임원, 이사에 의해 시비가 발생할 경우 중재, 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본협회 단체 내부의 모든 법정송사는 먼저 중재 및 조정기구가 그 문제점의 시비를 충분히 다루어 그 결과가 나온 후에만 가능하다.
- ③ 중재 및 조정기구를 상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.
- ④ 모든 법정송사는 중재재판(Arbitration)으로 한 한다.
- ⑤ 법정소송에서 재판포기 또는 재판부에 의해 기각 및 패소한자는 법정소송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.

제 81 조 (재적인수 제척) 본협회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, 자격정지 된 자느 제적인수에서 제외된다.

#### 제 82 조 (회의권자 및 발언권)

- ① 회의권자는 회의의 구성원이다.
- ② 발언권 신청은 회의권자에게만 있다.
- ③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각종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.
- ④ 의장은 회의권자를 제외하고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 시켜야 한다.

#### 제 83 조 (결의안 시행마감일)

- ①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안은 시행 마감일도 함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시행마감일은 대의원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.

## 제 84 조 (결의 조치 및 기록)

- ① 결의안은 의장의 공포함으로 효력이 발생 한다.
- ② 본협회는 결의사항을 대의원 및 이사에게 공문으로 통보 하여야한다.
- ③ 회의록은 반드시 본협회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 ·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85 조 (기록) 본협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은 서류는 수정없이 기록하고 영구 보관한다.

- 1. 해당 년도 본부 조직명부
- 2. 지역경기단체 조직명부
- 3. 사업성과
  - 가. 본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행사, 대회 계획과 결과
  - 나. 본협회가 행사 및 대회참가 계획과 결과

#### 제 86 조 (시행세칙)

- ① 본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제·개정된 지회규정, 선거운영세칙, 상벌규정, 대회운영규정 및 경기규정 등은 본협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 규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본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사한 결과 개·수정·삭제 및 삽입이 있을 때에는 본협회의 결정한 바에 의하여시행한다.
- ② 본 정관 이외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미대한체육회 정관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상례법에 의하여 처리한다

## 제 87 조 (준용규정)

① 본 정관은 각 지회규정에 우선하며, 당해 단체의 규정을 이 정관에 맞게 개정하지 아니하여 이

정관과 당해 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정관에 따라야 한다.

② 본협회 및 산하 단체는 비영리단체의 운영형식으로 한다.

**제 88 조 (시행일)** 본 정관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.(2007 년 6 월 25 일)

단,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(2019 년 6 월 22 일)